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09.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조 례 안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관계부서승인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09. 4. 17 ~ 5. 7(20일간)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내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과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단, 대학생은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어린이, 학생, 군인 또는 어른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시설물”이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이하 “백룡동굴”이라 한다),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을 말한다.
8. “관람료”란 백룡동굴과 생태관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내의 시설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②관광지 내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
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4.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①생태관 및 백룡동굴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 까지로 한다.

②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관광지 내의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사전결제 할 수 있다.

③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4.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개인 또는 단체에게 관광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세부적인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광지 시설물 입장을 거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및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6. 백룡동굴은 체험식 관람방법을 취하므로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노인의 입장을 제한한다. 단, 동굴관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인정 하에 허가할 수 있다.
7. 그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관람료의 환불) ①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2. 제8조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 경우
3. 생태관 또는 백룡동굴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결제한 경우 입장일 7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전액을, 입장일 6일에서 3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80퍼센트를, 입장일 2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70퍼센트를, 입장일 1일 이전부터 입장당일 지정일시 경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60퍼센트를 환불, 지정일시가 경과된 미사용 관람권에 대하여는 지정일시 경과 후부터 30분 이전까지 결제 금액의 40퍼센트를 환불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광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광지의 입장, 관람 및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개보수 등 시설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게시사항) 관광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 등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관람 요금표
4. 관람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매표 및 점인) ①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납부하며 군수가 지정한 직원이 직접 이를 징수한다. 단, 인터넷을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 매표소의 직원에 의해 본인확인을 마친 후 관람권을 교부한다.

②군수는 관광지의 홍보, 관광객유치를 위한 초대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수입금의 처리) 군수는 관람료·과태료등 수입금 중 일부를 당해 관광지 등의 보존, 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조치) ①관람자와 시설물사용자는 관광지내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람자가 관광지내 전시물을 오손, 파손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 대 상 | 구 분 | 개 인 | 단 체 |
|------|---------------|--------|--------|
| 일 반 |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 20,000 | 15,000 |
| | 어 른 | 25,000 | 20,000 |
| 평창군민 |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 10,000 | 7,500 |
| | 어 른 | 12,500 | 10,000 |

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 대 상 | 구 분 | 개 인 | 단 체 |
|------|----------|-------|-------|
| 일 반 | 어 린 이 | 1,500 | 1,000 |
| | 청소년 및 군인 | 2,000 | 1,500 |
| | 어 른 | 3,000 | 2,000 |
| 평창군민 | 어 린 이 | 750 | 500 |
| | 청소년 및 군인 | 1,000 | 750 |
| | 어 른 | 1,500 | 1,000 |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